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
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270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반장의 임기)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장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반장에 대하여 임기를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반장의 임기)</u> <u>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u> <u>할 수 있다.</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반장의 임기를 새로이 신설하여 통반조직의 내실화를 꾀하고,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반장의 임기(3년) 신설 (안 제4조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안 제4조,5조)

라.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 6,7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서울특별시 증주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

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수당)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5조)
- 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 수립 의무화 (안 제6조)
- 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명시 (안 제7조)
- 마.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 명시(안 제8조)
- 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의무화 (안 제9조)
- 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규정 명시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2. 중구의회 의원
3.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
6.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

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중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구 소속 공무원 및 중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 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

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가.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4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과 위원의 임기 및 수당 등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시 권익보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예산확보 등)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

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

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전문기관과 업무협조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의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긴급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

관에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점검 세부항목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한다.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미끄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구 분	점 검 항 목
럼틀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흠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영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의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 다.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및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6조~제8조)
-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 띄어쓰기 정비
 -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 증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증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최창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 참여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보건지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2.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3.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4.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참여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제2장 보건지소

제3조(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건강 환경 조성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과 다양한 참여방식의 보건교육 등 제공
3.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지원
4. 기타 보건지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인을 두어 하며,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보건소 직원이 겸임 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 ①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소별로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운영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건강위원회) ① 주민건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일반 거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건강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업운영,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제8조(설치)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운영협의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회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당연직 회원을 제외한 회원 중 호선한다.

③ 건강도시과장은 당연직 회원이 되고, 민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위원장
 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협의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
2.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회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참석한 회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건지소 설치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약수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92	약수동
황학보건지소	서울시 중구 난계로 11길52	황학동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수요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형 보건지소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건강증진에 대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 설치·업무·운영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나. 주민건강위원회 (안 제7조)

다. 보건지소운영협의회 설치·구성·기능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회원의 임기, 회장 등의 직무·위촉 해제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마. 실비보상 등(안 제15조)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54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격증	
⑥ 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역관계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반명함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연령	만 세	

계

인

<u>응 시 표</u>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반명함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연령	만 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시험 일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 ⑪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 ⑬ 사 진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210mm×297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소속												고용일자	
성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의 ()	
		개인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신상			좌	우							
		병역	미필	역종	병과	계급	군번		입대일	제대일	복무기간		
		관계									년 월		
구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구분	년월일		종류		시행청		
가족관계						자격증							
						상별관계							

(뒷면)

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 당 업 무	기 타 사 항	기록자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격기준) ① (생략) 1. (생략) 2. <u>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u> 3. ~ 7. (생략) ② (생략)	제7조(자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div style="text-align: right;">(앞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응 시 원 서</div>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20 년 월 일 성명 (인)</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15%;">② 주 소</td> <td style="width: 35%;"></td> <td style="width: 15%;">③ 전 화 번 호</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④ 최종출신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졸업, 중퇴)</td> <td>⑤ 자 격 증</td> <td></td> <td></td> </tr> <tr> <td>⑥ 경 력 (최근)</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 무 기 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 무 처 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담 당 업 무</td> </tr> <tr> <td>⑦ 병역관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2">⑧ 응시번호</td> <td>⑨ 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글)</td> <td rowspan="2">⑩ 성별</td> <td style="text-align: center;">남</td> <td rowspan="2">⑬ 사 인 진 (반명합판)</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td> </tr> <tr> <td></td> <td>⑪ 주민등록 번호</td> <td></td> <td>⑫ 연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세</td> <td></td> </tr> </table> 계 인					② 주 소		③ 전 화 번 호			④ 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 병역관계	-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주민등록 번호		⑫ 연령	만 세		【별지 제1호서식】 <div style="text-align: right;">(앞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응 시 원 서</div>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20 년 월 일 성명 (인)</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15%;">② 주 소</td> <td style="width: 35%;"></td> <td style="width: 15%;">③ 전 화 번 호</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20%;"></td> </tr> <tr> <td>④ 최종출신학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졸업, 중퇴)</td> <td>⑤ 자 격 증</td> <td></td> <td></td> </tr> <tr> <td>⑥ 경 력 (최근)</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 무 기 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근 무 처 명</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담 당 업 무</td> </tr> <tr> <td>⑦ 병역관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rowspan="2">⑧ 응시번호</td> <td>⑨ 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글)</td> <td rowspan="2">⑩ 성별</td> <td style="text-align: center;">남</td> <td rowspan="2">⑬ 사 인 진 (반명합판)</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td> </tr> <tr> <td></td> <td>⑪ 생년월일</td> <td></td> <td>⑫ 연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세</td> <td></td> </tr> </table> 계 인					② 주 소		③ 전 화 번 호			④ 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 병역관계	-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연령	만 세	
② 주 소		③ 전 화 번 호																																																																													
④ 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 병역관계	-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주민등록 번호		⑫ 연령	만 세																																																																											
② 주 소		③ 전 화 번 호																																																																													
④ 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 병역관계	-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연령	만 세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응 시 표</div>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15%;">⑧ 응시번호</td> <td style="width: 15%;">⑨ 성 명</td> <td style="width: 15%;">(한글)</td> <td style="width: 15%;">⑩ 성별</td> <td style="width: 15%;">남</td> <td rowspan="2" style="width: 20%;">⑬ 사 인 진 (반명합판)</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td> </tr> <tr> <td></td> <td>⑪ 주민등록 번호</td> <td></td> <td>⑫ 연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세</td> <td></td> </tr> </table>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주민등록 번호		⑫ 연령	만 세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응 시 표</div>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15%;">⑧ 응시번호</td> <td style="width: 15%;">⑨ 성 명</td> <td style="width: 15%;">(한글)</td> <td style="width: 15%;">⑩ 성별</td> <td style="width: 15%;">남</td> <td rowspan="2" style="width: 20%;">⑬ 사 인 진 (반명합판)</td> </tr> <tr>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여</td> </tr> <tr> <td></td> <td>⑪ 생년월일</td> <td></td> <td>⑫ 연령</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세</td> <td></td> </tr> </table>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연령	만 세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주민등록 번호		⑫ 연령	만 세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인 진 (반명합판)																																																																										
		(한자)		여																																																																											
	⑪ 생년월일		⑫ 연령	만 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 ²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 ²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응시원서 작성요령</p> <p>※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 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⑪ <u>주민등록번호</u> : 주민등록증에 의한 <u>주민등록번호</u>를 기재할 것.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⑬ 사 진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div>	<p style="text-align: right;">(뒷면)</p> <p style="text-align: center;">응시원서 작성요령</p> <p>※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 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⑪ <u>생년월일</u> : 주민등록증에 의한 <u>생년월일</u>을 기재할 것.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⑬ 사 진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div>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기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기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210mm×297인쇄용지(2급)60g/m ²												210mm×297인쇄용지(2급)60g/m ²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소속					고용일자					소속					고용일자																				
성명	한글	성 별		<u>주민등록번호</u>	주 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성명	한글	성 별		<u>생년월일</u>	주 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한자	남	여																		
		개인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개인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신상			좌	우									신상			좌	우																
		병역	미 필	역 중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일	제대일	복 무 기 간						병역	미 필	역 중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일	제대일	복 무 기 간											
		관계								년 월						관계																			
구분	관계	성명	<u>주민등록번호</u>	학 력	직 업	구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구분	관계	성명	<u>생년월일</u>	학 력	직 업	구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가 족 관 계																																			
(뒷면)															(뒷면)																				
경력 및 발령사항						경력 및 발령사항						경력 및 발령사항						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기타사항		기록자 인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기타사항		기록자 인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기타사항		기록자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고용 자격기준 개정 (제7조)

- 환경미화원 고용 부적격 기준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나. 환경미화원 채용 및 인사관리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